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2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정희용·김소희·박성민

김성원 • 안상훈 • 김형동

정동만 · 김위상 · 박덕흠

김태호 · 김예지 · 백종헌

서천호 · 정점식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는 경우 운영자로 하여금 연안 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를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참가자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기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연 안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 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방법 및 절차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
육) ① ~ ⑤ (생 략)	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
	해를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⑦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 <신 설></u>	⑧ 제7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
	<u>육 및 홍보의 대상·방법 및</u>
	절차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	<u> <삭 제></u>
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	
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